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2950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강정한, 김경수, 김진욱, 김해봉, 이재철, 이혜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현, 이홍걸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727,7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727,7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0. 2. 1. 주식회사 E에 굴삭기 구입대금 중 100,700,000원을 대여하고 2010. 3. 5.부터 월 2,651,830원씩 48개월간 상환받기로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할부금융약정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D의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D은 2014. 6. 11.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4. 12. 18.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D과 주식회사 F의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2016.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4642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10. 8.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 1) C의 부 G은 처로 H을, 자녀로 C과 피고, I, J, K, L, B을 두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2) C이 2019. 11. 13.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20.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16. 근저당권자 M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C인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과정에서 C의 몫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000만 원을 C을 대위하여 변제하고 2020. 6. 3.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및 M 주식회사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N주민자치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할부기간이 종료한 2014. 2.경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8. 29.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은 없이 부채만 부담하고 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으며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서 각자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이 사건 분할협의 과정에서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수익자인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C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역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M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그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0. 6. 3.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20. 6. 22. 주식회사 O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7,600만 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155,458,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16,727,746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55,458,1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0,000,000원) × C의 상속분 2/1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는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16,727,746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의 대상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P과 피고 Q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1.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727,7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727,7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답 674㎡

2.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답 337㎡

-이상-

